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<input type="radio"/> 부동산등의 일부(지분 또는 부속토지 등) 취득시 가액기준 불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(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) 판단기준 개선 <input type="radio"/> 부동산등의 일부(지분) 취득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
※ 【시가인정액 적용 예외】 1. 상속 : 시가표준액 2. <u>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</u> : <u>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</u> 3. 그 외 : 시가인정액(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)	일부 지분 취득 시 ⇒ <u>전체</u>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 시 ⇒ <u>전체</u> 주택의 시가표준액

□ 개정내용

-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
 -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 산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■ **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(시행일)**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**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(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)**

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